

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

뉴스레터

WEEKLY NEWSLETTER



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

유럽연합,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‘비스페놀 A’ 고위험 우려 물질로 분류



- 유럽 사법재판소는 비스페놀 A(BPA) 물질이 사람의 체내로 유입되면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, BPA를 ‘고위험 우려 물질(a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)’로 분류하고 일일 섭취 허용량의 기준을 크게 낮춤
- 적용 대상: 비스페놀 A로 제조하는 식품용기 및 기타 제품(치과 레진, 영수증용 감열지 현상제 등)으로, 특정 제품에 대한 사용 제한을 규정한 것은 아님
- 주요 내용(BPA 일일 섭취 허용량(TDI, tolerable daily intake) 변경 사항)

기존	변경
하루 섭취 기준 체중 1kg당 44μg(마이크로그램)	하루 섭취 기준 체중 1kg당 0.2ng(나노그램)

기타(환경)

이슈
바로가기

출처: European Union Law, Establishment of a list of · · · ‘a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’. Case C-119/21 P, 2023.03.09.

캐나다, 「즉석섭취식품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에 대한 정책」 변경



- 캐나다 보건부는 RTE 식품의 정의, RTE 식품 내 리스테리아균의 성장과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산 조건 등을 업데이트한 2023년 「즉석섭취식품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에 대한 정책(Policy on Listeria monocytogenes in ready-to-eat food)」을 발표함
- 적용 대상: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즉석섭취식품의 제조 및 수입 과정에 적용됨
- 주요 내용(주요 변경 사항)
- 리스테리아 정책의 입법적 맥락을 포함한 개념들의 가독성과 명확성 개선
- RTE 식품의 리스테리아 균의 유입 또는 성장을 최소화하는 생산 조건
- 리스테리아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업체 기준
- RTE 식품의 정의, RTE 식품의 분류 및 세분화를 위한 분류표(decision tree)
- 취약 계층을 위한 즉석섭취식품의 기준 구체적 명시

(*) 시행일: 2023년 10월 1일(그 전까지는 리스테리아 정책(2011)이 유효함)

출처: Government of Canada, Policy on Listeria monocytogenes in ready-to-eat foods (2023): Overview, 2023.03.27

SPS

이슈
바로가기

영국, 브렉시트 이후 영국만의 식품 수입 기준 설정 및 관련 지침 발표



-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자체적인 수입 식품 국경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「국경 대상 시행 모델(Border Target Operating Model)」을 공지하고, EU에서 수입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함
- 주요 내용(주요 규제 내용 및 추진 일정)
- 1) 주요 변경 사항: 새로운 안전 및 보안 모델의 도입, 새로운 위생 및 식물 위생 통제, 영국 단일 무역 창구의 개발
- 2) 적용 대상: ‘안전 및 보안 통제’ 사항은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며, ‘위생 및 식물 위생 통제’ 사항은 영국으로 수입되는 살아있는 동물, 배아 제품, 식물 및 식물성 제품에 적용됨
- 3) 추진 예상 일정

추진 예상 일정	
2023년 10월 31일	EU에서 영국으로 수입되는 중위험 동물성 제품과 식물, 식물성 제품 및 비동물성 사료에 대한 건강 증명서 도입
2024년 1월 31일	EU 및 비 EU 상품 모두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위험 기반 수입 메커니즘 구현
2024년 10월 31일	EU 수입품에 안전 및 보안 신고 필요

수입통관

이슈
바로가기

출처: Chemlinked, UK to Introduce a New Mechanism for Food Imports, 2023.04.10.



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

뉴스레터

WEEKLY NEWSLETTER

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

영국,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가능('may contain') 표시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진행



- 영국 식품기준청은 예방적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(PAL, precautionary allergen labelling)에 관한 신규 지침의 적용 방식과 시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
 - 예방적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는 일반적으로 식품 포장에 'may contain(함유 가능)' 경고로 표시되는 사항을 의미함
 - 주요 내용(신규 지침의 주요 내용)
 - PAL의 주요 알레르겐 14종 중 어떤 것인지를 명시해야 함예) '견과류 함유 가능' → X / '땅콩 함유 가능' 또는 '피스타치오 함유 가능' → O
 - '무첨가(Free-from)'로 강조 표시된 동일 알레르겐에 PAL을 적용해서는 안 됨
예) '유제품 무첨가(dairy free)'로 표시된 제품에 '우유 함유 가능' 문구 표시 금지 - '글루텐 함유 성분 없음(NGCI)'을 사용하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함
예) '글루텐 무첨가(gluten free)' 또는 '저글루텐(low gluten)'만 사용 권장
- (*) 의견 수렴 기간: 2023년 5월 22일까지

TBT

출처: Food Standards Agency, FSA seeks views on new 'May Contain' guidance, 2023.03.27

대만, 애완동물 사료의 라벨링 및 광고에 대한 원칙 제정



-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는 「애완동물 사료 라벨링 및 광고에서 허위, 과장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원칙」을 제정함
 - 주요 내용
 - 적용 대상: 개와 고양이 사료의 용기, 외부 포장 또는 설명서의 표시, 홍보 및 광고
 -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, 과장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
 - 사실이 아닌 경우: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(판단 기준은 부록 1에 명시)
 - 과장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: 의학적 효능을 포함하거나 동물의 장기, 조직, 신체 구조, 생리적 또는 외관을 변경하는 기능 포함(판단 기준은 부록 2에 명시)
- (*) 발효일: 2024년 1월 1일

TBT

출처: 行政院農業委員會, 中華民國112年4月11日 農牧字第1120042289號, 2023.04.18

중국, 영양강화제, 효소 제제 등 7가지 식품 첨가물의 신규 승인 및 사용 범위 확대



- 주요 내용
 - 신규 승인 성분
 - 식품 영양 강화제: Se-메틸셀레노시스테인(L-Se-methylselenocysteine)
 - 효소: D-사이코스 3-에피머라제(D-psicose 3-epimerase)
 - 성분의 사용 범위 확대
 - 식품 첨가제

이름	식품 카테고리	최대 사용량
아스코빌팔미테이트 (Ascorbyl palmitate)	즉석 쌀국수 제품	0.2g/kg

SPS

- 영양 강화제

이름	식품 카테고리	최대 사용량
비타민 B1	특수용도음료 (스포츠음료, 영양음료 포함)	2mg/kg ~ 5mg/kg
비타민 B2		2mg/kg ~ 5mg/kg
타우린		0.1g/kg ~ 0.6g/kg
아스코빌팔미테이트(효소)	비타민 C의 복합원으로서 사용 범위와 사용량은 GB14880(영양강화제 표준)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	

출처: Chemlinked, [Updated] China Food Additives in 2023: · · · Seven New Food Additives, 2023.05.08